



인권경영 선언문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동원시스템즈는 경제적 가치(EV, Economic Value)와 사회적 가치(SV, Social Value)를 동시에 추구하고 관리하는 Double Bottom Line(DBL)을 경영철학의 기반으로 삼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구성원, 고객, 협력회사, 지역사회,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. 회사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추구합니다. 나아가 실재적·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,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며,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제 2 조 (원칙과 적용범위)

동원시스템즈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, 국제인권장전(International Bill of Rights),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) 및 국제노동기구(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) 핵심협약¹, 경제협력 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(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), 유엔 아동권리 협약, 유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,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,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등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지하고,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.

인권 취약그룹에 실제적·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선주민, 여성, 국가적·민족적·종교적·언어적 소수자, 아동, 장애인, 이주 노동자 및 그의 가족, 인권 옹호자 등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명시한 기타 국제 표준 및 원칙의 준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본 인권경영 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동원시스템즈와 국내외 계열회사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. 나아가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인권존중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.

¹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(제 87 호), 단결권 단체교섭권 협약(제 98 호), 강제노동협약(제 29 호) 및 2014 년 의정서, 강제노동협약 폐지(제 105 호), 최저연령협약(제 138 호), 아동노동협약(제 182 호),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(제 100 호), 차별(고용 및 직업) 협약(제 111 호)을 의미함.

제 3 조 (최고경영진의 책임과 의무)

동원시스템즈의 최고경영진은 동원시스템즈의 사업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고 관리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. 동원시스템즈의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는 다양한 사업관계를 비롯한 가치사슬, 기능(운영)부서 및 사업(영업)부서 등 내에서 인권경영의 실행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. 또한, 최고경영진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책을 제·개정 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.

제 2 장 세부 내용

제 4 조 (구성원의 인권)

- ①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연소자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② 출신, 인종, 성별, 장애, 종교, 나이,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과 임금·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,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. 더불어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여 자기 개발과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.
- ③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④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과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고,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구성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.
- ⑤ 구성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한다.
- 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, 구성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.

제 5 조 (고객 인권)

-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업무상 수집한

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·물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책임감 있게 보호한다.

제 6 조 (비즈니스 파트너 및 공급망의 인권)

-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,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(공급망)에게도 인권·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.

제 7 조 (지역사회와의 인권)

- ①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지역주민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한다.
- ②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,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확산 및 연구개발을 장려한다.

제 8 조 (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권리)

- ①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,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한다.
- ②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
제 9 조 (인권 침해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)

- ① 구성원, 비즈니스 파트너,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·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신고 접수 시 인권 전담부서에 전달하여,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.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- ② 회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, 상담, 접수보고, 조사, 결과보고를 외부기관에 위탁합니다.

제 10 조 (온라인 제보 및 담당 조직)

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
- 담당 조직 : 경영진단실, 조직소통실, 리스크관리팀
- 웹사이트 : <https://www.dongwonsystems.com/company/human>
- 이 메 일 : ethics@dongwon.com
- 전 화 : 02-589-4113, 02-589-3583

2024 년 6 월

동원시스템즈(주) 대표이사 조 점 근, 서 범 원



동원시스템즈(주) 대표이사

부칙

본 인권경영 선언문은 202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